

I. 출제경향 분석

출제영역		문항수	분석 및 총 평과 수험대책
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	1	1) 분석 ① 조문문제에 대한 분석 - 대부분의 문제에서 조문이 지문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형소규칙 규정도 몇몇 지문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순수한 조문 문제는 9문제로 분석된다. ② 판례문제에 대한 분석 - 대부분의 지문에서 판례가 출제되어 조문과 판례의 출제라는 등식이 또 한번 입증되었다. 그리고 최신판례가 몇 개 보인다. 순수한 판례 문제는 6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과 판례의 결합형 문제는 4문제로 분석된다. ③ 이론문제에 대한 분석 - 이번 시험에서 이론문제로 경찰수사권 독립론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었다. 2) 총 평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中下정도로 평가된다. 12번 박스형 문제는 수험생들이 조금은 어렵게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이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평이했다. 소송법에 기본 실력을 갖춘 수험생은 1문항 내지 최대 2문항 정도 틀렸으리라 보이지만, 기본적인 암기사항을 암기하지 않은 수험생은 몇 문제 더 틀릴 수도 있겠다. 3) 수험대비 조문(형소법, 형소규칙, 특별법 등)과 중요 판례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및 암기가 요구된다. 최신 판례에 대한 대비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론문제에 대한 대비는 특별한 준비를 요하지 않고 강의내용을 철저히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면 되겠다.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편	수사의 기본이론	4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1	
	대인적 강제처분	2	
	대물적 강제처분	2	
3편	수사의 종결		
	소송절차		
4편	공소권이론		
	공판절차의 기초이론	1	
	소송의 주체	1	
5편	공판심리의 범위		
	공판절차의 진행	1	
	증거법 서설		
6편	증거능력	2	
	증명력		
7편	재판 일반론	1	
	상소심절차	2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2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II. 무료 해설강의 일정 및 2011년 시험대비 수험전략 설명

일시	2010년 9월 14일 화요일 16 : 30부터(부산)
장소	(부산) 한겨레 경찰학원 401호 대강의실
해설 동영상	고시가이드 (www.gosiguide.co.kr)

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①

- ①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따라서 고용주는 신청권이 없다.
- ② O 제243조의2 제2항
- ③ O 제243조의2 제3항
- ④ O 제243조의2 제5항

4.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 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
- ②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③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④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해설 ②

- ② X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판결).
- ① O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판결
- ③ O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 ④ O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5. 다음 중 옳은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 변사자의 검시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 또는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흥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면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해설 ③

- ③ O 제234조
- ① X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제222조 제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체 검시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222조 제3항).
- ② X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항).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흥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3항).
- ④ X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반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6.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 ②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③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④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해설 ①

- ① X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 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 ② O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7681 판결
- ③ O 대법원 1995.5.9. 선고 95도696 판결
- ④ O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도3282 판결).

7.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반드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
-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해설 ①

- 1) 옳은 것 : ㉢
 2) 틀린 것 : ㉠㉡㉣
 ㉢ O 제213조의2, 제200조의5
 ㉠ X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제6항).
 ㉡ X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27. 자 2002도81 결정).
 ㉣ X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등 참조).

8.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도망한 때
- ②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③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
- ④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해설 ③

③ X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 ① O 제102조 제2항 제1호
- ② O 제102조 제2항 제2호
- ④ O 제102조 제2항 제4호

9.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②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
- ④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해설 ④

④ X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5.25. 자 2007도82 결정).

- ① O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판결
- ② O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판결
- ③ O 대법원 1998. 4. 16. 자 97모25 결정

10.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청구(제184조)와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의 차이점인 것은?

- ① 청구시기
- ② 청구권자
- ③ 당사자참여권 인정
- ④ 청구사유의 소명

해설 ②

- ② 차이점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2 제1항). 따라서 청구권자의 차이가 있다.
- ① 공통점 : 제1회공판기일 전(제184조 제1항, 제221조의2 제1항)
- ③ 공통점 : 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판결, 제221조의2 제5항
- ④ 공통점 : 제184조 제3항, 제221조의2 제3항

11.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 재연의 상황을 기재하거나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②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조사 과정에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 ④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②

- ② X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 ① O 대법원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
- ③ O 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219 판결
- ④ 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갈음하는 대체물인 진술 또는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전문법칙을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판결).

12.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 ㉡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종료 후 실시한다.
- ㉢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 검사가 한다.
- ㉣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일단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④

- 1) 틀린 것 : ㉡㉢㉣㉤
- 2) 옳은 것 : ㉠
- ㉡ X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296조의2 제1항).
 - ㉢ X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제291조의2 제1항).
 - ㉣ X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규칙 제134조 제4항).
 - ㉤ X 법 제312조 및 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규칙 제135조).
 - ㉠ O 규칙 제132조, 제132조의2 제3항

13.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가장 완화되어 있는 것은?

- 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②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
-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
- ④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

해설 ③

- ③ ○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3조 제2항, 제313조 제1항). 따라서 가장 완화된 요건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가장 완화된 것부터 나열하면 ③, ②, ④, ①의 순서이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가장 엄격한 요건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① X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3항).
- ② X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
- ④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제312조 제4항).

14.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 ③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 ④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해설 ①

- ① X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 ② O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5도6557 판결
- ③ O 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판결
- ④ O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15.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③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④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당해 공소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

해설 ②

- ② X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① O 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 ③ O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 ④ O 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도9678 판결

16. 경찰수사권 독립론에 관한 설명 중 긍정설의 논거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 ① 검사는 법률 전문가일 뿐이고, 수사전문가는 아니다.
- ② 범죄의 예방과 진압·수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 ③ 대량의 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④ 경찰수사권을 독립시키려면 사법경찰관리의 자질향상 내지 전문화, 인권의식의 체질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경찰의 지방분권화 등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설 ④

- ④ X 경찰수사권 독립론에 관한 시기상조론의 논거에 해당한다. 수사권 독립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견해이다.
- ① O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긍정론의 논거이다.
- ② O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긍정론의 논거이다. 현재 수사에 있어서는 행정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조직 일원화라는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수사권 독립을 긍정하는 논거로 삼고 있다.
- ③ O 경찰수사권 독립론의 긍정론의 논거이다.

17.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단순일죄, 포괄일죄 및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는 없다.
- ④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십되고, 이러한 경우로는 일부 상소가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주문에 대한 것,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 죄에 대한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해설 ③

- ③ X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 ① O 경합범이 아닌 단순일죄, 포괄일죄, 과형상일죄 등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고, 이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전부상소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0.1.25. 선고 89도478 판결 등).
- ② O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5항
- ④ O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

18.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 기피신청기각결정 | ㉡ 보석허가결정 |
| ㉢ 구속취소결정 | ㉣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발부 |
|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 상소권회복결정 |
| ㉦ 재정신청에서 비용부담결정 | |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해설 ②

- 1) 즉시항고 불가 : ㉠㉡
- 2) 즉시항고 가능 : ㉢㉣㉤㉥㉦
- ㉠ 불가 : 헌법재판소 1993.12.23. 93헌가2 全員裁判部
- ㉡ 불가 : 대법원 1997. 9. 29. 자 97모66 결정
- ㉢ 가능 : 제23조
- ㉣ 가능 : 제97조 제3항
- ㉤ 가능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 가능 : 제347조 제2항
- ㉦ 가능 : 제262조의3

19.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 ②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벌금, 과료 또는 몰수가 징역, 금고, 구류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 ③ 즉결심판에 의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또는 고지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해설 ③

- ③ X 판사는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 제5항).
- ① O 동법 제10조
- ② O 제448조 제1항
- ④ O 제453조 제1항

20. 소년법에 관한 형사절차 내용 중 틀린 것은?

- ①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③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 ④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해설 ①

- ① X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 ② O 동법 제49조 제1항
- ③ O 동법 제55조 제1항
- ④ O 동법 제4조 제1항, 제2항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시험을 준비하는 내내, 항상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그 긴장감이.....

지금 이순간만은, 잠깐만이라도 그 긴장감을 풀어 놓으세요.

그리고 만끽해요. 이 여유를.....

그럴수 있을만큼, 여러분들은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사소송법 담당교수 박용두 올림